

證券去來關係法制 整備의 現況과 展望

元 容 洙*

차 례

I. 서 언

II. 증권거래관계 법제에 관한 고찰

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규정
2.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제도 개선 및 증권업무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
 - (1) 증권업 허가 개선
 - (2)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3)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완화
 - (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5) 그 밖의 규제완화
3. 증권거래법상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
 - (1) 정보공시에 관한 법규정
 -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
4.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
5.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정
6.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규정
7.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8.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에 관한 규정
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규정과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감사자격규정

III. 결 어

* 淑明女子大學校 法學科 教授

I. 서 언

1997년 말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에 가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준 IMF경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분야에서는 대대적인 법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폐지를 비롯하여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등 증권거래관계법제도 다수의 부분에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반 동안 그에 관한 법령들은 과거와 비교해 보건대 지나치게 빈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개정되어 관련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법령의 대개정은 경제 회생과 관련하여 기업 구조조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증권거래관계법제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미래의 입법에 관한 전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을 중심으로 해당사항을 고찰하려고 한다.

요컨대, 최근 증권거래관계법제가 개정된 상황에서 이에 관한 다수의 우수한 연구업적이 나온 바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하는 것은 미래의 관련 법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I. 증권거래관계 법제에 관한 고찰

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규정

1990년대에 들어와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행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1997년 1월 13일 개정)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탁증서(1997년 1월 13일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

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7년 1월 13일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외국증권투자신탁업관련법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소위 “외국투자신탁증권”),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소위 “기업어음”) 및 한국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소위 “유가증권옵션”)이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참조).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법과 동법시행령은 유가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¹⁾ 이러한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은 법문의 해석상 의문을 줄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증권시장의 발달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현상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의 출현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²⁾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1991년 12월 31일의 증

1) 이에 비하여 미국의 증권법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법은 광범위한 전통적인 종류의 유가증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나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알려진(commonly known as a security) 증서와 같이 포괄적인 정의에 대하여서는 법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역할을 판례가 해 왔으며, 이러한 미국법의 정의 규정에 “달리 해석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이라고 하는 상황요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식이나 사채와 같이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증권유형에 해당하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존재 여부도 법원에 의하여 판단된다(김건식, “미연방증권법규상 증권의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지』 1985년 8월호, 78면; 이철송,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 『상사법 연구』 제8집, 1990, 31~34면 참조).

또한 프랑스법은 1988년 12월 23일의 동산증권의 집단적인 모집단체에 관한 법(Loi n°88-1201 du 23 décembre 1988 relative aux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 en valeurs mobilières)에서 다소 추상적인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유가증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제가 되면 구체적인 해석을 증권거래위원회(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C.O.B.)나 법원에 의뢰하게 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원용수, “증권규제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소고 - 우리 나라, 미국 및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숙명여대 현대사회발전』 제5집, 1992, 75~76면 및 88면 참조).

2) 이와 관련되는 상세한 논의는 이철송, “증권거래법 개정의 논리”, 『증권』, 1991년 6월

권거래법 제10차개정이 다소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남겼으므로, 1997년 1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등이 개정되었거나 또는 신설된 바 있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는 자본시장과 국제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다.³⁾ 미국의 증권거래규제법하에서도 우리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대상이 판례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최대한의 투자자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원도 증권의 정의와 관련되는 수많은 소송을 증권이 개입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

2.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제도 개선 및 증권업무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

(1) 증권업 허가 개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러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러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6항).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증권업자는 물론 외국증권업자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과 금융기관과 신탁회사가 증권업을 겸영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에 관한 규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호에 게재된 논문 참조.

- 3) 같은 취지로는 고창현/허영만, “개정증권거래법 검토 - 증권발행, 유통 및 산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제248호, 1997년 4월호, 9면 참조.
- 4) Marc I. Steinberg, *Understanding Securities Law*, Matthew Bender, 1989, pp.15~27; 김진식, 전제논문, 77면이하 및 유영일, “우리나라와 미국증권법상의 증권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법의 행방』, 박영사, 1990, 438면 이하 참조.

(2)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증권회사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2월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소극적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완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행선고를 받거나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증권거래법 제33조제1항제3호)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증권거래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가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완되었으며,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임원 결격사유로 전문개정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과거에 비하여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유지와 건전한 증권 영업을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인가사항과 보고사항에 관한 규정이 다소 개정된 바 있다. 예컨대, 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35조 및 제36조).

또한 증권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의무규정이 최근에 보완되었다. 즉,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대금과 매매익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그러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보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증권투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은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 고객예탁금의 별도 예치 및 고객예치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객의 유가증권의 담보제공등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45조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

관리할 수 없으며(증권거래법 제44조의2 참조),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고, 매매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일정한 증서를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참조).

이 밖에도 투자자보호와 관련되는 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 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자기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46조 및 제46조의2 참조).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회계를 처리하고 장부를 비치하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47조).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증권거래법 제48조).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용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고, 이러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 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49조 참조).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증권거래법 제50조 참조). 증권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업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51조제1항 참조).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증권거래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증권회사가 일정한 증권거래법의 규정등을 위반하거나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 및 제57조 참조).

재정경제부장관은 증권회사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1월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인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55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허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스스로营业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 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증권거래법 제56조). 증권회사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영업만을 허가 받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증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62조).

최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증권회사자본금 증액명령제 폐지, 증권회사의 대주주 1인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된 것, 증권회사의 상호변경 및 지점등 신설·이전·영업중지 또는 재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된 것,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중개업무 허용 및 증권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단주 매매 허용등이 이루어졌다.⁵⁾

5) “증권관계법을 개정요강”, 증권거래법, 『국가고시』, 1996년 11월호, 226면.

그리고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더 완화되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45조, 제48조 등이 삭제되었다.

(3)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완화

최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거래소 상근임원의 겸직 승인제,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회원총회 소집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상장승인제, 재정경제부장관의 상장명령·상장폐지명령 및 매매거래정지명령제도,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매매상황보고제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정관과 업무관련 규정등 변경명령제도등이 폐지되었다.⁶⁾

또한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더욱 더 완화되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73조제2항, 제78조제8항, 제86조, 제104조, 제110조, 제111조, 제117조 등이 삭제되었다.

(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최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금융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변경승인제, 재정경제부장관의 정관·규정의 변경명령제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대부방법과 조건의 변경명령제,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예산·결산보고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채발행 한도 승인제 등이 폐지되었다.⁷⁾

그리고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더 완화되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59조는 삭제되었다.

(5) 그 밖의 규제완화

최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협회의 정관·업무관련규정 등 변경명령제, 재정경제부장관의 증권예탁원의 정관·업무 관련 규정등 변경명령제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회계감사인 및 피감사법인에 대한 명령제 등이 폐지되었다.⁸⁾

6) 전계서, 226~227면.
7) 전계서, 227면.
8) 전계서, 227면.

그리고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가 더욱 더 완화되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64조제2항,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7제2항, 제176조, 제189조, 제191조의12제2항, 제192조의2, 제207조 등이 삭제되었다.

3. 증권거래법상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은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시에 관한 법제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1) 정보공시에 관한 법규정

증권거래법상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규정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일정한 유가증권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3조 및 제4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한 등록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5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등록법인에 대하여 자금조달·재무구조의 개선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6조).

유가증권의 모집 가액 또는 매출 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 그리고 그러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8조제2항). 그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8조제3항).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증권거래법 제12조). 또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7조). 이러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하지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증권거래법 제18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 신고의 신고인·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조제1항).

상장법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기타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령·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외에는 당해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3항 및 제193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5항). 또한 이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인 발기보고서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인 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이 밖에도 주식대량보유 상황의 공시, 공개매수의 경우 공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공시(증권거래법 제199조)등이 있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증권거래법은 첨단기술을 위하여 전자공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이러한 정보화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규정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

최근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관한 법제가 상당히 보완되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규정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신주인수권부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익의 반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그러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8조제3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제1항).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1항 및 제2항).

4.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 제21조제3항에서 공개매수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1항에서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함)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함)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의결권 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환·입찰 기타 유상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매수하여야 한다.

1998년 2월 24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오던 강제 내지 의무공개매수제도⁹⁾를 폐지하였다. 즉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는

9) 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이문성, “개정 증권거래법 아래서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액주주의 보호”, 『상장협』 1997년 5월호, 43면 이하; 김진식, “개정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여야 하고(동법 제21조제2항), 그 매수가격은 공개매수자가 1년간 거래한 가격 중 최고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25조의2제2항, 동시행령 제13조의3제1호).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삭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아니한 강제공개매수 규정이 사라지는 현상은 미래의 입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생겨서 불가피한 법개정이 있어야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다수 전문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다면 그러한 수치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폐지된 증권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의 규정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되었으나 실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보다 더 많으며 법리적 측면에서도 논리적 정당성이 입증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에 관하여 좀더 신중한 고려를 하여 전면적 철폐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¹¹⁾

이 밖에도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기 공개매수가 허용되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참조).¹²⁾

5.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정

1996년 말의 증권거래법 개정은 소수주주권의 지주요건을 완화시켰으며 후술하는 주주제안권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24일과 5월 25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은 주주제안권 제도를 다소 수정한 바 있다.

공개매수제도”, 『인권과 정의』 제248호, 1997년 4월호, 31면 이하 참조.

10) 권기범, “의무적 지분추가매수에 관한 연구”,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II)』(박길준 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년 10월, 998면.

11) 정동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대책과 그 적법성”, 『법조』 통권 제508호, 1999년 1월, 11면.

12) 이 규정과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은 M&A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866면).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방어전략이 좀 더 개발되어 우리 기업의 보호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소수주주의 지주요건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등에 의하면,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은 0.5%(0.25%),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0.5%(0.25%), 대표소송제기권은 0.0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3%(1.5%),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1%(0.5%),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은 3%(1.5%),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은 0.5%(0.25%)로 되어 있으며, 이 요건 외에 주식에 대한 5개월의 보유기간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2월의 개정상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의 법개정은 실효성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크게 기여한 적절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미국 회사법의 영향을 받아 소수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먼저 도입되었는데(동법 제191조), 나중에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도 도입한 바 있다.

1997년 1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목적으로 일본 상법의 영향을 받아 주주제안제도가 신설되었다(동법 제191조의14). 또한 1998년 12월 2일의 개정상법도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³⁾

주주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참조). 또한 증권거래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주주제안이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제84조의21제3항제1호~제7호), 입법의 착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 같다.¹⁴⁾

6.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규정

이 제도는 미국법상의 Stock option을 1997년 1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

13) 이철송, “98년 개정회사법 개관”, 『인권과 정의』 제270호, 1999년 2월, 14면.

14)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999년, 400~401면 참조.

정에 의하여 도입하였으며, 1997년 12월 13일 및 1998년 1월 8일의 개정으로 수정·보완되었다.¹⁵⁾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실적금(Incentive)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⁶⁾ 따라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그 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일본에서는 1995년 특정신규사업실시원활화임시조치법의 개정시에 벤처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¹⁸⁾ 또한 프랑스에서도 1970년 12월 31일의 개정 회사법(Loi n°70-1322 du 31 décembre 1970)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¹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1항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입선택권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및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

15) 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유영일, “개정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입선택권”, 『인권과 정의』 제248호, 1997년 4월호, 48면 이하; 정동윤,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하여”, 『고대법학논집』 제33호, 1997년, 503면 이하 참조.

16)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1995년, 368면 및 유영일, 상계논문, 48면.

17) 김교창, “Stock Option제도의 회사별(상장, 일반) 구체적 활용방안”, 『인권과 정의』 제251호, 1997년 7월호, 73면.

18) 김교창, 상계논문, 73면.

19) M.Cozian et A.Viandier, *Droit des sociétés*, Litec, 1998, n°931; 프랑스에 서는 주식인수 또는 매입선택권(L'option de souscription ou d'achat d'action)이라는 제목하에 1966년 7월 24일의 상사회사법 기본법상에 제208-1조에서 제208-8조까지의 8개 조문을 신설하였다.

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방식, 자기주식의 교부방식 및 주식평가보상(Stock Appreciation Rights)의 방식 등이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2항 참조).²⁰⁾ 주식매입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부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결의일부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하는 회사는 관련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신고일부부터 주식매입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8항). 이와 같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회사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을 활용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7항).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도하며 관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주부여의 한도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행사가격등 특별결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3항).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5%이고 벤처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다. 그리고 1인당 한도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세법상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와 연간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7.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하거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이와 같은 주식의 대량보유에 관한 보고의무는 소위 5% Rule이라고 불리운다.²¹⁾

20) 김교창, 전계논문, 74면.

21)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이종찬, “증권거래법 제200조 폐지와 5% Rule”, 『주식』 제308호, 1994년 4월호, 3면 이하 참조; 또한 이에 관련된 프랑스법의 태도에 관하여는

5% Rule의 목적에 관하여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시장의 투명성제고와 경영권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5% Rule의 목적이 선진외국과 우리 나라간에 차이가 있어서 5% Rule의 보완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5% Rule은 1997년 1월 13일, 1998년 1월 8일 및 1998년 5월 25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상당히 수정되고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개선가능성을 남겨 놓은 상황에 있다.

8.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에 관한 규정

우리 나라는 1973년 제5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증권거래법상 증권예탁결제 체도를 도입한 이래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시켜왔다. 1974년 12월 6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예탁결제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 4월 25일 동회사는 증권예탁원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후 증권예탁결제제도가 급속히 발전되었다.

증권예탁원은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나라의 유일한 예탁업무영위의 법인이다(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73조의3 참조). 이런 증권예탁원의 주요업무에는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유가증권의 계좌간 대체업무,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예탁기관과의 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 대체업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등이 포함된다(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참조).

증권거래법의 구조하에서 각 고객은 직접적으로 증권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할 수 없으며,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예탁자인 기관투자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예탁원은 그러한 예탁자에게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12). 그리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증권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예탁원은

원용수, “프랑스법상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제도가 유럽연합증권법에 미친 영향과 향후의 전망”, 『안암법학』 제4집, 1996, 626~630면 참조.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를 관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6조의2). 또한 증권예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무취급절차와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예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예탁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 고객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유가증권을 예탁하게 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우리 나라의 증권관계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프랑스의 증권예탁제도와 무권화(dématérialisation)제도를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여 입법론을 정립할 필요성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된다.²²⁾

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규정과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감사자격규정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로부터 다수의 금융증권연구위원회가 1941년 6월 18일의 법을 기초로 한 기존의 증권예탁결제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증권무권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로 인하여 1982년의 금융법(Loi des Finances) 제94-II조와 1983년 5월 2일의 시행령에서 증권무권화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1983년 5월 3일부터 35년 후인 2018년 5월 3일에 완전한 증권무권화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원용수, “프랑스의 증권예탁결제제도”, 『비교사법』 통권 제5호, 1996년 12월, 21면 참조). 현재 유가증권 무권화제도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는 프랑스와 덴마크를 들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대규모의 주식회사는 감사가 하는 내부감사 외에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는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참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미국법상의 회계감사인(auditor), 독일법상의 결산검사인(Abschlussprüfer) 또는 프랑스법상의 회계감사인(commissaire aux comptes) 제도²³⁾의 영향을 받아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297호로 신설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 1998년 1월 8일과 1998년 2월 24일에 개정된 바 있다.

1998년 1월 8일의 중요한 개정 내용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라 함은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 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하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3호),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5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그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주주명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제4항). 이와 같이 1998년 1월 8일의 개정법은 결합재무제표의 규정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규정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었다. 또 하나

23) 이에 관하여 상세한 문헌으로는 원용수, “프랑스회사법상 회계감사인에 관한 소고”, 『손주찬교수고회기념논문집』, 삼성출판사, 1993년, 369면 이하 및 원용수, “프랑스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업무 감독기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논문집』 제34집, 1993년 12월, 91면 이하 참조.

이 제도는 프랑스의 기업지배구조(Le gouvernement des entreprises)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회사법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 프랑스의 회사법제 개선에 관한 1996년의 유명한 Marini 보고서인 “회사법의 현대화(La modernisation du droit des sociétés)”에서도 이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Philippe Marini, *La modernisation du droit des sociétés*, Collection des rapports officiel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Mieux définir le rôle des commissaires aux comptes, pp.96~100).

의 중요 내용으로는 IBRD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제도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IBRD측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도입 요구에 대한 우선적인 절충안으로서 도입되었으며, 추후 OECD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가이드라인과 이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감사위원회 제도가 상법상 도입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사외이사 내지 독립이사제도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1997년 1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부실과 경영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자격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적극적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소극적 요건에는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및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추가되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참조).

Ⅲ. 결 어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관계법제의 현황을 중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증권거래법등이 급속히 개정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우리의 증권거래관계법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전세계적으로 전자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주도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른바 전자증권거래법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주식개별 옵션을 대상으로 한 전자증권거래소가 미국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공인 증권거래소로 인가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²⁴⁾ 이러한 획기적 사건의 전단계로서 SEC는 1995년부터 연방증권법상 정보전달요건의 충족을 위한 전자전달(electronic delivery)방식의 이용에 관한 해석 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지기

24) 『증권예탁』 제28호, 1998년 4월, 192면.

시작하였다.²⁵⁾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에서는 인터넷과 증권거래법상의 모집, 증권사기 그리고 SEC Rule 10b-5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⁶⁾ 그리고 미국의 1996년의 NYSE(New York Stock Exchange)규칙은 전자주권(shares issued in electronically registered form)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주제안권이나 위임장(Proxy Statements)도 Internet Technology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법적 상황은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관계법제의 빠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런던,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밀라노 등의 증권거래소간의 제휴를 계기로 통일된 EU증권거래소의 탄생이 목전에 다가와 있으며, 조만간 세련된 통합 EU증권거래법이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증권관계법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증권관련법들과 법적 환경을 분석·검토하여 당면한 국가 경제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5) 제강호,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시에 관한 미국 SEC의 실무”, 『증권』 제94호, 1997년 12월호, 22면.

26) 이에 관한 최신의 문헌으로는 Howerd M. Friedman, *Securities Regulation in Cyberspace*; Donald C. Langevort, “Angels on the Internet; The Elusive Promise of Technological Disintermediation for Unregistered Offerings of Securities”, *The Journal of Small & Emerging Business Law*, Vol.2, 1998, Articles pp.1~26; Robert A. Prentice, “The Future of Corporate Disclosure : The Internet, Securities Fraud , And Rule 10b-5”, *Emory Law Journal*, Vol. 47, 1988, No.1, pp.1~88; Bernard S. Black, “Information Asymmetry, The Internet and Securities Offerings”, *The Journal of Small & Emerging Business Law*, Vol.2, 1998, pp.91~99등이 있다.